



Creating the future, together

Korean Tax Newsletter

2023년 12월

[세법개정](#) | [과세관청 소식](#) | [예규·판례](#) | [Contacts](#)

• 예규·판례

가. 독립세 전환 전 이월세액공제 법인지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사건
(대법원 2020 두 41696, 2023. 11. 30. 선고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 처분취소)

▣ 관련 법리

-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한 개정 세법 부칙조항을 근거로 하여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 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할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의 원인행위 시에 유효하였던 종전 규정에서 이미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그 원

인행위에 기초한 과세요건의 충족이 있는 경우에도 특별히 비과세 내지 면제한 다거나 과세를 유예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설령 납세의무자가 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의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1. 5. 29. 선고 98 두 13713 판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 두 12662 판결 등 참조).

■ 사건 개요

- 원고는 2009~2013 사업연도에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 12173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 조, 제 11 조, 제 24 조, 제 25 조의 3, 제 26 조, 제 144 조 제 1 항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 10406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6 조, 제 144 조 제 1 항(이하 위 각 규정을 통틀어 '구 조특법 제 144 조 제 1 항 등'이라 한다)에 따른 법인세 세액공제 또는 이월공제 대상인 연구. 인력개발비 등(이하 '이 사건 연구비 등'이라 한다)을 지출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최저한세 미달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연구비 등을 위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또는 이월공제받지 못하였다.
- 지방세법이 2014. 1. 1. 법률 제 12153 호로 개정되면서(이하 '이 사건 개정'이라 하고, 이 개정 전 지방세법을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내국법인의 소득에 관한 지방세 과세체계가 종래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10%'의 세율을 적용하는 부가세 방식(지방소득세 법인세분)에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법인세율의 10%'를 세율로 적용하는 독립세 방식(법인지방소득세)으로 변경되었다. 이 사건 개정으로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 제 1 조 본문은 '이 법은 2014. 1. 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부칙 제 2 조 단서는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기간이 시작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부칙 제 15 조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과규정'이라 한다)
- 원고는 이 사건 연구비 등과 관련하여, 구 조특법 제 144 조 제 1 항 등에 따른 이월공제를 적용하여 2014~2017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나, 같은 기간의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할 때에는 독립세 방식으로 변경된 과세체계로 인하여 구 조특법 제 144 조 제 1 항 등에 따른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않았다.
-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경과규정을 근거로 이 사건 연구비 등과 관련한 2014~2017 사업연도 법인세 이월공제의 효과가 같은 기간 법인지방소득세에도 미친다고 주장하면서, 2018. 10. 8. 당초 신고. 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액의 일부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11. 16. 이를 거부하였다.

■ 판단(기각)

- 원심은, 이 사건 개정의 대상이 된 구 지방세법 제 89 조 제 1 항, 제 94 조 제 1 항은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의 산출방법만 규정하였을 뿐 직접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에 관한 조세감면 등을 규정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연구비 등의 법인세 이월 공제에 관한 구 조특법 제 144 조 제 1 항 등은 구 지방세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는 등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구 지방세법 및 구 조특법 규정들은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에 관하여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조세감면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종전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2014~2017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이 사건 경과규정을 근거로 구 지방세법의 과세표준 및 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경과규정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쟁점세금계산서가 청구법인이 실제 쟁점자문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하고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련 비용을 손금불산입(기타 사외유출)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22 서 8135, 2023.12.12)

■ 처분 개요

- 청구법인은 2020.3.2. 설립되어 서울특별시 강남구 000 에서 서비스 및 경영 컨설팅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20.4.3. 비상장회사인 AAA 주식회사 발행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외 2 개 법인의 주식을 총 000 원에 취득하였다가 2020.6.24. 그 중 이 사건 주식을 000 원에 매각하여 000 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였다.
- 청구법인은 2020 사업연도에 ① AAA 이 대표로 있는 BBB 주식회사, CCC 주식회사, DDD 주식회사 (이하 각 "BBB-주", "CCC-주", "DDD-주"라 하고, 이를 합하여 "쟁점법인들"이라 한다)로부터 투자자문 또는 경영관리 자문용역(이하 "쟁점자문용역"이라 한다)을 제공받고 수수료 000 원(BBB-주 000 원, CCC-주 000 원, DDD-주 000 원, 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을 지급한 것으로 하여 쟁점법인들로부터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받았고, ② 해외법률자문사로부터 법률자문용역(이하 "쟁점해외자문용역"이라 한다)을 제공받고 해외법률자문료 000 원(이하 "해외자문료"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 처분청은 2021.10.15.부터 2022.5.9.까지(중지기간 포함) 청구법인의 2020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2021.11.24. 조세법칙조사 전환)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20 사업연도에 ① 특수관계에 있는 쟁점법인들로부터 실제 쟁점자문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쟁점수수

료를 가공경비로 하여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였고, ② 실질 의사결정자 AAA 이 부담해야 할 해외자문료를 청구법인이 대신 지급한 것으로 보아 해외자문료를 손금불산입하여, 022.7.6. 청구법인에게 2020 사업연도 법인세 000 원, 2020 년 제 1 기 부가가치세 000 원, 2020 년 제 2 기 부가가치세 000 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해외자문료 000 원을 AAA 에 대한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쟁점

- 쟁점세금계산서가 청구법인이 실제 쟁점자문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하고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해외자문료를 AAA 이 부담해야 할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AAA 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 판단(경정)

-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법인들로부터 투자자문 또는 경영관리 자문용역 등 쟁점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쟁점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 BBB-주와 DDD-주는 2020 년 원천세 및 근로소득 등 지급명세서 신고내역이 없어 쟁점수수료 지급 당시 법인에 용역을 제공할 수 있는 직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사업장도 공유오피스에 단기 임차한 사업장으로 임차된 공간에 책상 1 개만이 있을 뿐 사업에 필요한 어떠한 자산도 없는 명목상의 회사인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법인에게 2020 사업연도에 경영자문, 투자자문 서비스 관련 자문용역을 수행할 인적·물적 자원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BBB-주와 DDD-주가 쟁점법인들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CCC 등에게 투자자문내용을 보고서·이메일 등으로 보고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BBB-주와 DDD-주가 청구법인에게 쟁점자문용역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반면, CCC-주(쟁점수수료 중 000 원)의 경우 소속된 직원이 2019 년 1 명, 2020 년 5 명, 2021 년 4 명으로 확인되는 등 사업장 및 직원이 실재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제출된 이메일 등 증빙자료에 의하면 CCC-주 소속 EEE 부장이 청구법인의 설립 단계에서부터 회계장부의 작성 및 세무신고 등 각종 업무를 대신해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미국 펀드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입하였다가 이를 투자법인에 양도함에 따라 000 원 가량의 수익이 발생하였으나, 청구법인에는 이 사건 주식을 취득 및 양도하고 청구법인을 관리할 수 있는 직원이 존재하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주식 취득 단계에서부터 법인 경영관리, 이 사건 주식 양도 및 관련 회계·세무신고 단계에 이르기까지 관련

용역을 CCC-주로부터 제공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CCC-주에게 지급한 수수료까지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AAA 개인이 해외법률자문사로부터 쟁점해외자문용역을 제공받았음에도 청구법인이 그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고 보아 이를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 청구법인은 미국펀드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법률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쟁점해외자문용역을 제공받고 해외자문료를 지출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이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고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익이 모두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주식 양수도 거래로 인한 수익과 관련 비용이 모두 청구법인에게 발생한 이상 AAA 이 사실상 이 사건 주식 양수도 거래를 주도했다는 사유만으로 그 수수료를 AAA 이 지출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AAA 이 해외법률자문사로부터 해외자문료의 일부라도 되돌려 받은 정황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해외자문료를 손금불산입하고 AAA 에 대한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시설용 건물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서면-2023-법인-2948, 2023.11.09)

■ 질의 요지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7.4.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취득하고, 재활용시설을 계속 투자 중에 있음.
- 질의법인은 2023.7.21.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기술 및 시설(건물제외)에 대해 신성장 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을 받음

(질의요지)

- 재활용시설 설치를 위해 신축한 건물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

- 「조세특례제한법」 제 24 조의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활용시설에 해당하는 폐배터리 재활용 시설로서 폐배터리 재활용 공정상 필수적이고 재활용시설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신축된 건물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 12 조 제 2 항 제 3 호에 따른 환경보전시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법인이 신축한 건물이 신성장 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21 조 제 4 항 각 호에 따라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인정받을 사항입니다.

라.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시 직전 3 년간 연평균 투자금액 계산방법 (서면-2023-법인-3581, 2023.11.20)

▣ 질의 요지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집단에너지사업 영위법인으로 2018 과세연도에 투자를 개시하여 2021 과세연도에 준공된 집단에너지시설에 대해 2021 과세연도에 투자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

(질의요지)

- 2021 년에 투자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한 경우 2022 년 이후 직전 3 년 연평균 투자금액 계산방법

▣ 회신

-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 24 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2018 과세연도부터 2021 과세연도까지에 걸쳐서 이루어진 투자에 대하여 같은 법 부칙 (2020.12.29. 17759 호로 개정된 것) 제 4 조제 2 항에 따라 투자를 완료한 2021 과세연도에 모든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공제를 적용한 경우에도, 2022 과세연도 투자분에 대하여 같은 법 제 24 조제 1 항제 2 호나목의 "추가공제금액"을 계산할 때 직전 3 년간 연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은 매 과세연도에 실제 투자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마. 사업자가 국내 다른 사업자에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국외에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해당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

적인 부분이 공급되는 곳이 국내인지 국외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 임 (사전-2023-법규부가-0093, 2023.12.05)

■ 질의 요지

(사실관계)

- (주)□□(이하 “신청법인” 또는 “갑법인”)은 국내의 다른 사업자(이하 “을법인”)와 ‘영업·마케팅 및 판매 협력 계약’(이하 “쟁점계약”, 관련 용역은 “쟁점용역”)을 체결하여
-을법인으로부터 ‘국외(◇◇) 내 을법인의 제품을 영업·마케팅하는 독점적 권리’를 허여받음
- 신청법인은 국외(◇◇) 내 신청법인의 자회사(이하 “국외 자회사”)와 쟁점용역을 위탁하는 내용의 커미션 계약(이하 “커미션 계약”)을 체결하여 쟁점용역을 수행하고 을법인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음.

(질의요지)

- 사업자(갑)가 국내의 다른 사업자(을)와 ‘영업·마케팅 및 판매 협력 계약’을 체결하고 갑은 국외 자회사에 해당 영업·마케팅을 위탁하여 수행하며, 그 대가로 을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용역의 국외공급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 회신

- 사업자(이하 “갑법인”)가 국내의 다른 사업자(이하 “을법인”)와 영업·마케팅 및 판매 협력 계약을 체결하면서 을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을법인의 제품을 영업·마케팅(이하 “쟁점용역”)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허여받아 국외에 소재하는 갑법인의 자회사에 쟁점용역을 위탁하여 갑법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하고 을법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로서 쟁점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 22 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쟁점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쟁점용역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간 계약내용, 쟁점용역 수행 현황 및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kr/about to learn more.

Deloitte is a leading global provider of audit and assurance, consulting, financial advisory, risk advisory, tax and related services. Our network of member firms in more than 150 countries and territories serves four out of five Fortune Global 500® companies. Learn how Deloitte’s approximately 286,000 people make an impact that matters at www.deloitte.com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its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network”)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entity in the Deloitte network shall be responsible for any loss whatsoever sustained by any person who relies on this communication.

© 2024. For information, contact Deloitte Anjin LLC

To no longer receive emails about this topic please send a return email to the sender with the word “Unsubscribe” in the subject line.